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86

발의연월일: 2020. 11. 5.

발 의 자: 김상훈·최춘식·최연숙

김석기 • 박대수 • 강대식

서병수 • 조수진 • 이종배

이달곤 · 송언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사용주가 직접 고용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수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,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현행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 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규직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(안 제30

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의2제1항 중 "2020년"을 "2022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의2(정규직 근로자로의 전	제30조의2(정규직 근로자로의 전
환에 따른 세액공제) ① 중소	환에 따른 세액공제) ①
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중견기업이 2019년 6월 30	
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「기간	
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	
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간제근	
로자 및 단시간근로자(이하 이	
조에서 "기간제근로자 및 단시	
간근로자"라 한다), 「파견근로	
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	
따른 파견근로자, 「하도급거래	
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	
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	
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<u>202</u>	<u>2</u>
<u>0년</u>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	<u>022년</u>
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	
근로자로 전환하거나 「파견근	
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	
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	
하거나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	
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제2호	
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	

함이	없는	근도	.계약	을	제	<i>클</i>	아
여 2	직접 .	고용さ	하는	경:	우(0]	하
이 조	실에서	"정규	'직	근로	.자	로	의
전환"	'이라	한디	├)에 ^급	느	정	규	직
근로기	자로의	전	환에	하	당	하	는
인원여	에 1	천만원	릴(대	통령	령	<u></u>	로
정하는	는 중점	년기업	의	경우	에	는	7
00만	원)을	곱한	금	액을	-	해	당
과세역	연도의	소득	투세(사업	소	득	에
대한	소득서	ll 만	해당	한디	-)	또	는
법인기	세에서	공제	한디				

②・③ (생 략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